|  |  |  |
| --- | --- | --- |
|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면제에 관한 통지**재종[2012]71호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국무원 행정부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판발[2012]49호)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입 유관 행정사업성 비용 철폐 및 면제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0년 10월 1일부터 해관관리 수속비를 철폐한다. 2.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수출입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에 대하여 출입국검험검역비(출입국인원의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에 대하여 수취한 비용, 기업과 사업단위가 출입국검험검역과 관련한 상업성 자발위탁검사와 감정, 출입국검역처리, 동물면역접종업무를 맡아 수취한 비용은 불포함)를 면제한다. 3. 상술한 행정사업성 비용을 철폐 및 면제한 후, 중앙재정은 유관 부문의 경비예산을 통일하여 안배하고, 그 정상적 이행 책임을 보증한다. 4. 유관 집행/수취부문과 단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비용수취허가증> 말소수속을 처리하고, 재정부에서 증명서 말소처리를 해야 한다. 유관 행정사업성비용 정산수입은 재정부 규정에 근거하여 전액 국고로 상납한다. 5. 각 지역 및 관련부문은 본 통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행정사업성비용 철폐 및 면제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집행을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없으며, 기타명목 또는 경영서비스성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속 수취할 수 없다. 각급 재정, 가격주관부문은 본 통지의 이행현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철폐 또는 면제하지 않는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규명한다.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2012년 9월 18일 |  | **关于取消和免收进出口环节****有关行政事业性收费的通知**财综〔2012〕71号 海关总署、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 　　为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外贸稳定增长的若干意见》（国办发〔2012〕49号）的要求，现就取消和免收进出口环节有关行政事业性收费事项通知如下： 　　一、自2012年10月1日起，取消海关监管手续费。 　　二、自2012年10月1日起至2012年12月31日，对所有出入境货物、运输工具、集装箱及其他法定检验检疫物免收出入境检验检疫费（不包括对出入境人员预防接种和体检收取的费用，以及企事业单位承担与出入境检验检疫有关的商业性自愿委托检测和鉴定、出入境检疫处理、动物免疫接种工作收取的费用）。 　　三、取消和免收上述行政事业性收费后，中央财政将统筹安排相关部门的经费预算，保证其正常履行职责。 　　四、有关执收部门和单位要到国家发展改革委办理《收费许可证》注销手续，并到财政部办理票据缴销手续。有关行政事业性收费的清欠收入，按照财政部规定渠道全额上缴国库。 　　五、各地区和有关部门要严格执行本通知规定，对取消和免收的行政事业性收费，不得以任何理由拖延或者拒绝执行，不得以其他名目或者转为经营服务性收费方式变相继续收费。各级财政、价格主管部门要加强对落实本通知情况的监督检查，对不按规定取消或免收相关收费的，按有关规定给予处罚，并追究责任人员的行政责任。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2012年9月18日 |